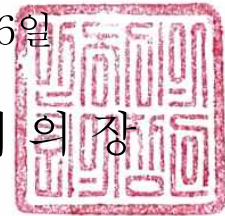


안동시의회 공고 제2021-63호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안 동 시 의 회 의 장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안동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청소년육성정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3조)
- 라.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24조)
- 마. 청소년교류 및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제27조)
- 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제32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2. 6. ~ 2021. 12. 11.(5일 이상)

4. 의견제출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21년 12월 11일까지 안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

1) 전자우편 : flora99@korea.kr

2) 주 소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의회

3) 팩 스 : 054-840-640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안동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 아동교육지원청, 아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육성사업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와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10.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11.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활동, 범죄예방 활동
 12.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청소년육성사업의 운영·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의 달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교육·체육·문화·자치활동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신문·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기관·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청소년복지의 증진) ① 시장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년보호의 수행)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

- 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답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

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인원은 반드시 포함한다.

1. 청소년 대표 3명, 청소년 보호자 대표 2명
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청소년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5. 청소년지도자, 대학교수 등 청소년 지원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7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안동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

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교류 및 자치·참여활동 지원

제25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모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견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모범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발한다.

1. 가정위탁보호아동
2.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거주 중인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가정의 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자매도시 협정) 시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자치·참여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자치·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자치·참여활동 공간의 조성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

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청소년지도위원

제28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지원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 청소년유익환경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과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1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협의회 운영) 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안동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읍·면·동별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이 10명 이상인 읍·면·동은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예산 및 기금

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안동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동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 및 안동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

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